

압 수 조 서

피의자	에 대한	피의사건에 관하여	년 월 일 시 분 경
에서	검사	은(는) 검찰주사(보)	을(를) 참여하게 하고 아래 경위와
같이	물건을	압수한다.	

①증제 번호	② 물건명	③특기사항						④비고		
		수량 등								
		압수이유	물수대상	☐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☐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☐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						
				☐ 장 물						
			☐ 기타 압수가 필요한 이유()							
		발견·압수 경위								
		소지자 (제출자)	성명		주민등록번호					
			주소				전화번호			
		소유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				
			주소				전화번호			
		☐ 소유권 포기 ☐ 환부 요구								
				수량 등						
				압수이유	물수대상	☐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☐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☐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				
☐ 장물										
☐ 그 밖에 압수가 필요한 이유()										
발견·압수 경위										
소지자 (제출자)	성명				주민등록번호					
	주소						전화번호			
소유자	성명				주민등록번호					
	주소						전화번호			
☐ 소유권 포기 ☐ 환부 요구										

		수량 등							
		압수이유	물수대상	☐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☐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☐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					
				☐ 장물					
			☐ 그 밖에 압수가 필요한 이유()						
		발견·압수 경위							
		소지자 (제출자)	성명		주민등록번호				
			주소				전화번호		
		소유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			
			주소				전화번호		
		☐ 소유권 포기 ☐ 환부 요구							
		수량 등							
		압수이유	물수대상	☐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☐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☐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					
				☐ 장물					
			☐ 그 밖에 압수가 필요한 이유()						
		발견·압수 경위							
		소지자 (제출자)	성명		주민등록번호				
			주소				전화번호		
		소유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			
			주소				전화번호		
		☐ 소유권 포기 ☐ 환부 요구							

참여인 (「형사소송법」 제123조, 제124조)	성명	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		전화번호	
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사유	☐ 「형사소송법」 제216조제1항제2호(체포현장에서의 압수)				
	☐ 「형사소송법」 제216조제2항(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)				
	☐ 「형사소송법」 제216조제3항(범죄장소에서의 압수)				
	☐ 「형사소송법」 제217조제1항(긴급체포시의 압수)				
	☐ 「형사소송법」 제218조(유류물·임의제출물의 압수)				
	☐ 기타()				
년 월 일					
검찰청					
검 사 ①인					
검찰주사(보) ①인					
참 여 인 ①인					